

#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 무산...한-중 국제소송 비화 가능성

### 법원 "복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정당"...내국인 진료제한 선고 연기

### 복지 측 "상식적 판단 기대못해...국제사법기관 판단 받을 수 밖에"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업자 측이 병원 설립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은 터여서 추후 이번 소송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인 ISD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 부장판사)는 20일 복지제주헬스케어타운(복지그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

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개설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고 밝혔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복지 측의 주장을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3개월 이내 업무 불개시에 대해 업무 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는 것으로 봤다. 복지 측은 지난해 2월과 4월 제주도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

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복지 측 사업 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 기관 설치에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다. 1심에서 패소한 복지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분류 판단은 하지 않고 재판부가 개설허가 취소의 취소는 작은 부분만 판단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정책결정권자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이상하고 기형적인 허가를 내주고 그 모든 책임을 일개 외국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다"면서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면 외국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ISD 소송 가능성을 열어놨다. 법원은 이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복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3개월 이내 업무 불개시에 대해 업무 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는 것으로 봤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부처분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복지국제병원의 모습.

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워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복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

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복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다. 기동취재본부

##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 은폐” 고발장

### “진실 파악하고 고발 조치 않아” 주장



지난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 9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련 고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은 전날 특조

위 위원장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먼저 유 전 관리관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위 조사의 적정성'과 관

련해 특조위 측이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고도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제 삼았다. 그는 "특조위 존속기간인 3년 동안 취득한 증거자료를 갖고 공정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규명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자들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관련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축소, 왜곡한 내용만을 알렸다"며 "가습기살균제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도 축소, 왜곡한 내용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은 또 "특조위 조사 책임자들은 법적보호 의무를 거부한 채 정보만 취득했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중대 기여자 지원금 지급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은폐 의혹을 조사하지 않고 증거수집과 진상규명 조사 관련 직무를 거부한 것"이라며 특조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오유나기자

## ‘미성년 성피해’ 배상시효, 성년까지 늦춘다

### 미성년 보호 강화 취지...일부 소급적용 가능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피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및 가해자들

안 날부터 3년' 또는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소멸시효로 두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해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관련 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거나 소멸시효 기한 내에 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당사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15세 때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를 알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20세가 되면 현행 민법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된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 광주, 심정지 환자 이송 소생률 전국 1위

### 광주 17.8% 17개 시도 중 1위...최근 4년새 꾸준한 증가

전국 시·도 가운데 광주가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 의식을 회복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지만 관련 지표가 해마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 제주시을)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심정지 환자 이송 소생률은 광주 17.8%, 전남 8.4%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이송 소생률이 높았으나, 전국 평균인 11%에 못 미친 전남은 하위권에 그쳤다.

최근 4년 사이 광주와 전남 모두 이송 소생률이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는 2016년 12.3%, 2017년 16.4%, 2018년 16.3%, 2019년 17.8%로 늘었다. 전남도 2016년 3.2%에서 해마다 늘어 2017년 5.2%, 2018년 6.7%를 기록, 지난해에는 8.4%까지 이송 소생률이 올랐다. 최근 전남 지역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소생률이 증가했다. 서선욱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